

郡政質問答辯書

- 질문일시 : 2005. 9. 9
- 질문의원 : 신주범 의원
- 질문내용 :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 ①인사원칙과 기준, 일용직 현황과 채용규정
 - ②전출·입에 관한 원칙과 규정, 앞으로의 계획
 - ③공무원특별임용 및 진직 현황과 앞으로 계획
 - ④조직진단 성과와 향후 계획

答辯者 : 行政課長

郡政質問答辯内容

□ 질문요지

- ①인사원칙과 기준, 일용직 현황과 채용규정
- ②전출·입에 관한 원칙과 규정, 앞으로의 계획
- ③공무원특별임용 및 진직 현황과 앞으로 계획
- ④조직진단 성과와 향후 계획

□ 답변요지

- ① 인사원칙과 기준, 일용직 현황과 채용규정에 대하여
 - 능력과 소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
 -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 결과 반영
 - 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유지되는 가운데 조직의 활력 도모
 - 전입은 전입후보자 명부배수 범위내
 - 상근인력은 33명으로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거 채용
 - 일용은 해당직종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채용기준
- ②전출입의 원칙과 규정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 연내 충원이 가능하고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
 - 충원이 어려운 직렬은 충원 전망이 있을 경우 동의
- ③특별임용 및 전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 최근 5년간 특별임용 13명, 전직 2명임
 - 일반직과 시험이 필요한 기능직은 도인사위원회 위탁 시험임용
 - 전직은 적직요건에 맞을 경우 전향적으로 전직 조치
- ④ 조직진단 성과와 앞으로 계획
 - 농업부분의 통합으로 농민들의 불편해소
 - 공무원들의 위기의식을 공유하여 업무연찬 분위기 전환
 - 연말에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성과분석 존치여부 판단 및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담당 적극 신설 검토

郡政質問答辯內容

□ 행정과장 윤생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인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똑 같이 적용되는 관련법령에 따라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어 군정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인사의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 결과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임용을 하고 조직의 역동성과 생산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발탁하여 승진을 시키며
 - **전보**는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가운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며
 - **군 전입**은 군 전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배수의 범위내에서 업무 추진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일용직 현황과 채용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은 『정원의 상근인력』 과 『일용』 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 우리군은 정원의 상근인력은 300일 이상 고용이 필요한 수로원 14명과 청소등 시설물 유지 관련인부 6명, 청원경찰 13명 등 총 3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 일용은 군 및 사업소, 읍면 등에 86명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연간 276일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부서장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규정은

- 정원의 상근인력의 경우는 『거창군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 에 의거 직종별로 담당할 업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자를 선정하여 신원조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고용하며,
직종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일용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사역을 하기 위해 연간 276일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부서장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코자 하는 직종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채용기준으로 삼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의 전출입에 관한 원칙과 규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공무원의 전출입에 관한 원칙과 규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규정에 의거 매년 행자부에서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이 교류계획에 의거 행자부에서 희망자들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상호간에 동의를 하면 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동의요청을 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우리군의 **전출입에 대한 원칙**은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연고지에 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고 연내 충원이 어려운 직렬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부분은 전출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로 양분되고 있습니다만
- 우리군에서는 연내 충원이 가능한 직렬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동의를 해주고 연내 충원이 불가능한 특수한 직렬은 인력충원의 전망이 있을 때 까지 조건부 동의를 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및 전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우리군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총 13명으로

- 2001년 : 5명(사회복지 1명, 전산 3명, 전기 1명)
- 2002년 : 3명(별정→사회복지)
- 2004년 : 5명(기능직 신규임용) 등 입니다.

○전직은 2005년에 건축 7급→전산 8급으로 1명

기능9급(운전)→기능9급(전산)으로 1명으로 전직하는등
총 2명을 전직했습니다.

○특별임용과 전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당해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를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계획이며

- 기능직 공무원중 필기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임용하고,

일반직과 기능직중 필기시험이 필요한 공무원의 임용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 이는 시험실운영이나 시험관리에 많은 예산과 문제점이 있어
도내 전시군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97. 11에 경남도인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요건)의 규정에 의거 전직요건에 해당될 경우 전향적으로 전직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전직예정직에 1년이상 근무한자를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전직
2. 직제 또는 정원개폐로 당해직위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등

□ 조직진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조직진단의 성과**에 대하여는 조직을 개편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조직개편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 가장 큰 성과는 농업분야를 농업기술센터 한 곳으로 통합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과
-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종전보다 더 활력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업무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찬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인력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과가 없고 존치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 그 대신 새로운 수요발생 등 꼭 신설이 필요한 부서에는 새로운 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